옥천군 공고 제2020-933호

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8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○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, 군에서 직접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목적 (안 제1조)

○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(안 제2조)

○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(안 제4조)

○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(안 제6조)

○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시설물 관리(안 제7조)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**2020년 9월 17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TEL : (043)730-3102 / FAX : (043)731-3195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군의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, 재해·재난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을방송시스템”이란 옥천군 읍·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, 재해·재난정보,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·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.
2. “휴대전화 수신장치”란 마을회관과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옥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4조(지원기준) 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
2. 내용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, 멸실,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
4.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「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르되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.

제5조(지원절차)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·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, 읍·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.

제6조(시설물 관리) ①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

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・관리한다.

②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(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,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, 정기검사 수수료 등)은 군에서 부담한다.

③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.

제7조(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)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마을 공지사항, 홍보사항 등의 전달
2.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항의 전달
3. 그 밖에 읍・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된 것으로 본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